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98
----------	-----

2016. 2. 4.(목)  
산업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11월 23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11월 24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1월 26일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재단명칭 변경 반영 및 중소기업대상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경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 위원장 변경(제4조제2항)

- 중소기업대상 선정을 위해 운용중인 중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개정

○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명칭 변경(제8조제2항)

- 2015.1.1.일부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으로 재단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 반영

3. 검토보고 요지(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오성일)

-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대상 선정을 위해 운용중인 중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개정함은 물론, 2015년 1월 1일자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으로 재단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 제3조 (생 략)</p> <p>제4조(위원회 설치) ① (생 략)</p> <p>② <u>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u> -----</p> <p>제8조(홍보 등) ① (생 략)</p> <p>② ----- <u>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u>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제9조 ~ 제11조 (생 략)</p>	<p>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u></p> <p>제4조(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u>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제9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발췌

### □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제4조(위원회 설치) ① 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소기업 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기관, 학계, 언론계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8조(홍보 등) ①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홍보를 위해 언론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대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3.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무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
2. 의회·정부·국회·정당·사회단체 등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

3. 도정 홍보 및 언론기관 협조
4. 경제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한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